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8754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의 지원절차를 마련하고, 용자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은 삭제하는 한편,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 징수 세부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자금 용자기준 등 삭제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절차 및 신청 서식 마련(안 7조, 별지 25호서식)
- 나.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사업주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의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

위에서 추가징수 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안 제8조제1항 신설)

다.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사업주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의 추가징수에 대한 통지서 서식 마련
(안 제8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내지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을 신설한다.

제7조(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자금 지원기준 등) 영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퇴근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부당 용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를 “(부당 지원금 등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징수를 결정”을 “징수 또는 추가징수를 결정”으로 하며, “반환통지서”를 “반환 또는 추가징수 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징수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로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을 받은 경우: 제공받은 지원금액(금전이 아닌 금품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의 5배

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로서 받아야 할 지원보다 과다하게 지원을 받은 경우: 과다하게 청구하여 제공받은 지원금액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액을 뺀 지원금액의 3배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지원금액의 2배

2. 법 제1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지원금액을 추가징수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00. 00.>

[] 반환 [] 추가징수 통지서

대상구분 (√ 표시)	☐ 장애인 고용시설 등 용자금		☐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지원금	
	☐ 고용관리비용 지원금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 직업생활안정자금 용자금		☐ 출퇴근 교통비	☐ 보조공학기가장비 구입대여 비용
납부 의무자 (√ 표시)	☐ 사업체		☐ 장애인	
	사업체명(또는 소속 사업체명)		대표자명(또는 성명)	
	소재지(또는 주소)			

용자·지원금 반환(추가징수)금 명세			
구 분	반환금	추가징수금	반환(추가징수)금 총금액
반환(추가징수) 명세	원	원	원
반환(추가징수) 사유			
반환(추가징수)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 [] 지정은행 (은행명: , 계좌번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반환(추가징수)을 통지하오니 위에 지정한 은행(계좌) 또는 첨부된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직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 신청서 [] 재산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유형		연락처(신청인)	
	중증여부	[] 중증 [] 경증	연락처(보호자)	
	주소 (거주지)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의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재지	본사 사업장		
국가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명칭)	(지원기간)	
지원금 지급 희망은행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참여를
([] 신청, [] 재산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 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 이후 생략 가능)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직원	1.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증빙자료 사본 1부	
확인사항	3.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자료 사본 1부 4.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전용카드 발급 안내	
	※ 연계카드 미 발급 시 지원금 지원 불가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사업주)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자금 융자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자금융자의 명세는 직업생활 안정자금 등으로 한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삭 제>
③ 장애인 근로자의 융자 우선순위와 융자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삭 제>
<신설>	제7조(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자금 지원기준 등) 영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퇴근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신 설>	제8조(부당 지원금 등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①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1.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징수	<신 설>	원금액의 3배
<신 설>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로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을 받은 경우: 제공받은 지원금액(금전이 아닌 금품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의 5배	<신 설>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지원금액의 2배
<신 설>	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로서 받아야 할 지원보다 과다하게 지원을 받은 경우: 과다하게 청구하여 제공받은 지원금액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액을 뺀 지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당 용자 또는 지원금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반환통지서에 의하여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징수 또는 추가징수를 결정----- ----- 반환 또는 추가 징수 통지서-----.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연 락 처	(044) 202 - 7489